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기 업 명

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다음의 운용관리계약 (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간사기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용관리기관 중 대표 운용관리기관을 말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 사용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사용자의 급여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은행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세부내용은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 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운용관리기관 과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 · 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 사용자는 은행이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 · 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은행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은행이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사용자는 제3항의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사용자 및 은행의 의무)

-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합니다.

-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사용자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 예 · 적금, 저축보통예금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약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 투자적격 해외채권
 -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약증권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 해외 상장주식
 -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 파생결합증권
 -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은행이 합의한 운용방법
-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 기타 사용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 기타 은행과 사용자가 합의한 방법
-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은행은 사용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까지 사용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에정일(만기에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 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매치되거나 자동 재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종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 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시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



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연금규약 및 별지3(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금의 재계산)

- ①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 제도 설정일로부터 최소한 3년 마다 표준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계산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변경, 정리해고 등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관계없이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재정건전성 확보)

- ① 은행은 사용자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또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은행이 제1항의 재정검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은행은 제2항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운용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제14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은행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재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 ⑤ 은행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지역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은행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7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은행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할 때 은행은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각되는 자산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금액이 변동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대기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기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 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등 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나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관에 입금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양도·압류·담보제공)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문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③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6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자연보상금은 운용지시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자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2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 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제14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3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4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25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동일할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신고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을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5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제4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기 업 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연금회계처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금회계처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 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 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2%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0.07%
3,000억원 이상	0.05%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 8차년도	15%
9차년도 ~ 13차년도	19%
14차년도 ~ 19차년도	21%
20차년도 이후	25%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초년도(신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부담금 납입금액 중 전환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07%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를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 (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기 업 명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서 후단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약(이 계약에서 “연금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4.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이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관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9.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11.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
13.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시장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

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① 은행은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수수료	비고
집합교육	0원	회차당
온라인(web)교육	0원	기업당
교부	0원	교부 매수당
전자우편	0원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연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할인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 받은 자료상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 · 적금(시중은행)
 3. 정기에 · 적금(저축은행)
 4. 발행어음
 5. 환매조건부채권(RP)
 6. 이율보충보험(GIC)
 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4. 제8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5.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은 행	주 소 :	
	성 명 :	(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7조(계약서의 작성 · 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교육방법	수수료	비고
상시게시	0원	

-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은행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사용자와 은행은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 ① 은행이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교육위탁계약을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은행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행	주소 :			
	성명 :	(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 (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1.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
- 부담금은 장래의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 때 장래급여의 예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조건을 기초율이라 하며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됩니다.
- 가. 부담금산출이율 : 예상이율
- ※ 예상이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 나. 예상사망률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합니다. 단, 예상퇴직월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예상퇴직률
-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상의 퇴직자 경험통계를 적용합니다.
- 라. 예상임금상승률
-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마. 다음의 경우에는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 (3) 과거 통계(경험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재정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방식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이며 부담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것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 Cost : NC)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tNC_g = \left[\sum_{t=0}^{T-t-1} \left(B_{g,t+T-t}^{(g)} \times \frac{\partial_{g,t+T-t}^{(g)}}{D_g} + B_{g,t+T-t}^{(d)} \times \frac{\partial_{g,t+T-t}^{(d)}}{D_g} \right) \times \frac{1}{r+t} \right] + B_{g,t+T-t}^{(e)} \times \frac{D_g}{D_g} \times \frac{1}{r+(g-t)}$$



- j : 가입자 1인
- x : j 의 산출기준일의 만연령
- r : 산출기준일의 근속년수
- y : 연금규약상 정한 정년 연령
- $B_{x,y}^{(1)}, B_{x,y}^{(2)}, \dots, B_{x,y}^{(n-1)}, B_{x,y}^{(n)}$: 중도, 사망, 정년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예상액
- D_x : (x)세의 재직자수의 현재가치
- $\bar{C}_{x+t}^{(n)}, \bar{C}_{x+t}^{(d)}$: (x+t) 세의 중도, 사망퇴직자수의 현재가치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평균 임금 또는 1년후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에서 산출기준일 현재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별 표준부담금

$$NC = \sum_{j=1}^a j NC_j$$

- a : 가입자수
- NC_j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 Cost : AC)

전체 가입자의 누적퇴직급여채무 합에서 적립금(연금자산)을 공제한 값을 일정한 기간동안 상각(상각기간은 10년 이내로 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퇴직할 경우의 예상퇴직급여를 필요적립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n 년 균등상각

$$AC = \frac{\sum_{t=1}^n AL - F_n}{\bar{a}_x}$$

- AL : $r \times j NC$
- n : 상각기간
- F_n : 실제 적립된 자산(또는 일시전환부담금)
- a : 가입자 수
- $\bar{a}_x$: 매기초에 1원씩 n 년동안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가치

(나) $p\%$ 정률 상각

$$\text{초년도} : AC = \left(\sum_{j=1}^a j AL - F_1 \right) \times p\%$$

- 초년도 이후 : $AC_t = UPSL_t \times p\%$

- $UPSL$: k 사업년도말 시점 장래 납입될 보충부담금 현재가치

(다) 최소 n 년에서 최대 z 년대 탄력상각

$$\frac{\sum_{t=1}^n j AL - F_n}{\bar{a}_x} \leq AC \leq \frac{\sum_{t=1}^z j AL - F_z}{\bar{a}_z}$$

(3)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SC)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액으로 합니다.

특별부담금 산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정검증기초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k 년도말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_jV^G$)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 및 계약직 등과 같이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_jV^G = {}_jAL$$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_jV^S$)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로 합니다.

$${}_jV^S = \text{추계액}$$

3. k 년도말 최소적립금 (F_k)

$$F_k = \text{Max}({}_jV^G, {}_jV^S) \times \mu$$

- μ : 규약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 (Special Cost : P^{SC})

$$P^{SC} = \text{Max}(F_k \times 0.95 - {}_jF, 0)$$

- ${}_jF$: k 사업년도말의 적립 자산(12개월 시가평균)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 가면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합니다.

Ⅲ. 부담금 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의 계산기초율을 사용하여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합니다.

Ⅳ. 기타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특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기 업 명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 ③ 사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은행의 사임 또는 제20조의 신탁계약의 이전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양도·압류·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④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사용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 ①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 ② 이 신탁은 사용자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에 이익계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일에 신탁이익을 신탁원본에 가산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 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④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⑥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압류·담보제공)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은행은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임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수행하며, 신탁자산관리업자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 ① 은행은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자제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은행,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2조제2항제3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기 업 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연 0.28%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2항8호에 따른 국내 상장증권 예탁증권(ETF)제외)에 대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체평균잔액의 70% 이상일 경우 해당 평균잔액은 수수료 산출시 제외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조에 의한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신청일,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적립금이전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 8차년도	15%
9차년도 ~ 13차년도	19%
14차년도 ~ 19차년도	21%
20차년도 이후	25%

- 3의 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한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 (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한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7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위탁자)	주소 : 성명 :	(인)
은행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신탁 관리인	주소 : 성명 :	(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3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 입 자 명

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이 계약에서 “연금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② 은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별지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 ① 사용자는 은행이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계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은행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계약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계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자 및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종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채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종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채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한 운용방법
- ④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⑤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⑦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발송
 - 서면 교부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법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
 -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
-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영업일에 현금성자산으로 투입
 -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6(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

-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7(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승인 취소 사유
 -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 기타 은행과 사용자 및 가입자가 합의한 방법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금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금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9조(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



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은행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은행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은행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수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③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 자산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2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입 및 중도인출 현황

제23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 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을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0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 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2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기 업 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

수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연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 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은행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연 0.10%를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8%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5%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20%
1,000억원 이상	0.10%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 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초년도(신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부담금 납입금액 중 전환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0%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연 0.10%를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록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
1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 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 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IF
 2. 정기예·적금(시중은행)
 3. 정기예·적금(저축은행)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윤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형)
 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부속 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기 업 명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는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 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 ① 은행은 연금계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 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 ① 은행은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수수료	비고
집합교육	0원	회차당
온라인(web)교육	0원	기업당
교부	0원	교부 매수당
우편	0원	
전자우편	0원	
상시게시	0원	

-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은행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사용자와 은행은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 ① 은행이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교육위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은행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 ·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기여영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확정기여영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별지2] 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 · 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기 업 명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 가입자는 은행과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은행의 사

임 또는 제20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입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



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 등을 신탁 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 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은행은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가입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③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 ① 은행은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주소(거주지 또는 사업장 포함),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 신탁계약을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 신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시시켜야 합니다.

제32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 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은행,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기업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연 0.28%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상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2항8호에 따른 국내 상장증권예탁증권(ETF)제외)에 대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제평균잔액의 70% 이상일 경우 해당 평균잔액은 수수료 산출시 제외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연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 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 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9.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7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 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위탁자)	주소 : 성명 : (인)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주소 : 성명 : (인)
신탁 관리인	주소 : 성명 : (인)
	주소 : 성명 :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 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 입 자 명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이 제도의 운용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한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것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한 운용방법
- ③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
-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자산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자산으로 투입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택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은행과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에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 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 ①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은행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별도로 정한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부담금 납입시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



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재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은행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 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 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 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지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3.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 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은행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을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① 법를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가 입 자 명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 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동일 사용자에게 소속된 은행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연 0.10%를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40%



1억원 이상	0.37%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초년도(신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부담금 납입금액 중 전환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사회책임기업과 예비사회책임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5%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책임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책임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연 0.15%를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책임기업, 예비사회책임기업	「사회책임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책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 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 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

- 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적금(시중은행)
 3. 정기예·적금(저축은행)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형)
 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 관련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 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③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④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 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주 소 : 성 명 : (인)
은 행	주 소 : 성 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 입 자 명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신탁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 ① 이 계약의 가입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

- 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 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가입자, 운용관리기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수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조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록,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조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종료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가 입 자 명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종료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 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종료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 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은행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신탁재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30%
1억원 이상	0.28%

-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 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

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책임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책임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대 상	판 단 기 준
사회책임기업, 예비사회책임기업	「사회책임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책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 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 입 자 명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 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이란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손님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투자일임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 가입자(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② 은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 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예 ·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약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 투자적격 해외채권
 -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 해외 상장주식
 -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 파생결합증권
 -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한 운용방법
- ③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만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에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
-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자산으로 투입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은행과 가입자가 합의한 방법
-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의 내용에 따라 투자 일임업자가 가입자에게 적용될 퇴직연금의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재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 및 재위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는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지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⑤ 연금지급액은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 매각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①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④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④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 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 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 기일의 다음



-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은행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옥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3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제3호2 적용 예시, 제3조제1항제3호3, 제3조제1항제11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가 입 자 명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



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 중 운용관리수수료는 연금지급신청일 또는 연금지급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직전계산기준일로 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 잔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 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은행이 매 연금지급일에 연금지급액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은행과의 계약경과년수가 4차년도 이상이고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동안 계약서 제7조 2항 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기준금액인 제1호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가.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 나.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 다. 차감예정 수수료 :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 라. 부담금납입액 : 계약서 제11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누적금액
 - 마. 인출액 : 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금액
- 1의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손익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은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 1의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 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최종연금 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 신청일을 운용 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 최종연금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 제1의4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5천만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3의2. 제1의3호에 적용하는 운용손익수수료율은 가목의 기본수수료와 나목의 손익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산정된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라 합니다.)이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확정된 다목의 기준지표를 상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은 경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

가. 기본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8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손익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비중)

(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값을 의미하며, 매분기 말 기준으로 익월 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이란 KOSPI 지수의 과거 10년 기간동안 매일 3년의 수익률을 산출, 이 3년 수익률 표본의 평균값을 기하평균하여 연환산한 값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및 주식 비중은 정수로 산정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4) 산정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라.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

<제3호의2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 예시>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초과 성과(A)	0.25% (0.15%)	0.25% (0%)	0.20% (0%)	0.08% (0.03%)	0.06% (0.03%)
동일(B)	0.20% (0.12%)	0.20% (0%)	0.16% (0%)	0.064% (0.024%)	0.048% (0.024%)
미달 성과(C)	0.15% (0.09%)	0.15% (0%)	0.12% (0%)	0.048% (0.018%)	0.036% (0.018%)

※ () 안은 전자금융으로 신규 계약한 경우

3의3.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5차년도	6~7차년도	8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18%	20%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 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0.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



- 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연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를 증명하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MMF
 - 정기예·적금(시중은행)
 - 정기예·적금(저축은행)
 -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발행어음
 - 환매조건부채권(RP)
 - 이율보증형보험(CIC)
 -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일임재산
 -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 제15호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복수로 운용중인 경우 이들간의 매도순서는 사전에 지정된 투자일임 매도순서에 따르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매도통지에 따라 일임재산으로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합니다.
 -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 보증형실적배당보험 상품의 경우 ①항의 매각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의 거치기간 종료 후 적립금자산 매각을 별도로 수행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가 입 자 명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 다. 자영업자
 -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 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 (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 ② 가입자는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투자임의사업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 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① 은행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⑤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수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입자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은행은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10월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제2항제3의2호, 제2조제2항제11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가 입 자 명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 중 자산관리수수료는 연금지급신청일 또는 매 연금 지급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

재산 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은행이 매 연금 지급일에 연금지급액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은행과의 계약경과년수가 4차년도 이상이고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동안 계약서 제7조 2항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기준금액인 제1호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가.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 나.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 다. 차감예정 수수료 :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 라. 부담금납입액 : 계약서 제11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누적금액
 - 마. 인출액 : 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일시금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일시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지급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신탁재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신탁재산 평가액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5천만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1억원 이상	0.1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	0.1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8%)

- 3의2.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2차년도	3차년도	4~5차년도	6~7차년도	8차년도 이후
할인율	10%	12%	15%	18%	20%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0.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1.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를 증명하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 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 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 계약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 ☐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